

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신복자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97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8월 05일

발 의 자: 신복자, 고광민, 곽향기,
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
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형재, 남궁역,
소영철, 신동원, 유정인,
윤기섭, 이경숙, 이민옥,
이상옥, 이용균, 장태용,
정지웅, 최민규, 황철규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인근 업소 대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여 물가안정 정책기조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확충을 위해 업소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 동참업소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성화 추진이 필요함
- 이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다양화하고, 이용의 날 지정 및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·운영 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지원내용을 보완함(안 제3조 제1호, 제3호 및 제5호)
- 나.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이용의 날 지정 및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(안 제4조 제1항 및 2항)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표지판”을 “표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쓰레기봉투 등 필요물품 및 상·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

5.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관측활동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“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”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“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” 지정·운영을 위하여 홍보 및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) 서울특별시장은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(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“착한가격업소” 표지판	1. ----- 표찰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<u>종량제 · 쓰레기봉투 지원</u>	3. <u>쓰레기봉투 등 필요물품 및 상·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<u>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</u>
5. (생 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제4조(이용 활성화) <u><신 설></u>	제4조(이용 활성화)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“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”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“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” 지정·운영을 위하여 홍보 및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(생 략)	③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“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”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기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[참고] 2024년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3조 1호, 3~4호 제4조제1항·제2항	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(물품, 시설개선비 등 지원)	975,504

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